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 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춰 통·반 조직규정, 통장추천방법 및 재위촉시 평가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통장의 임무를 찾아가는 현장행정,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현실에 맞게 변경 및 통·반장 직무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1개통은 6개반에서 10개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은 40세대에서 80세대로 구성하여 변화하는 거주환경을 반영함(안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 나. 통장선정, 추천방법 및 통장의 연임 시 재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추천 과정상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규칙에서 재위촉시 통장 평가제도 도입(안 제5조제3항)
- 다. 반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된다고 규정하여 명확성을 기함(안 제5조제5항)
- 라. 통·반장의 임무 중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추진사업 협조, 지역청소 및 저소득층 수혜자 추천 협조,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등 변화하는 행정 상황에 맞게 실질적으로 규정(안 제7조 관련)
- 마.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통·반장이 지명한 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기존 불합리한 직무대행규정을 개선(안 제7조 제2항)

바.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업무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과 사기고양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통·반장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정보화교육 등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10조의2)

###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 **4. 개정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8. 4. 17. ~ 2008. 5. 7.) :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반영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2008. 5. 8.)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6개반 내지 8개반”을 “6개반에서 10개반”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0가구 내지 40가구”를 “40세대에서 80세대”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③통장선정, 추천방법 및 통장의 연임 시 재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3항중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를 “「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를 “상한연령을 초과하면”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각 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7조제1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의 민원, 건의사항, 주민공동 관심사항 보고
3.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협조
4.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 확인
5.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추진사업 협조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 발생시 초동조사 협조

8. 관내 각종 사건사고 보고 및 수방·제설 등 지원
9. 지역청소 업무 및 저소득층 수혜자 추천 협조
10. 적십자회비 모금지원 및 민방위훈련 소집통지서 등 송달 협조
11.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12.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3.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4.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2항중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를 “통·반장의 가족 또는 통·반장이 지명한 반장이”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가구주 또는 주부”를 “세대원”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통·반장 교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업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과 사기고양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통·반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통·반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통·반장은 종전임기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 (목적)</b>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u>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 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 (목적)</b> 「<u>지방자치법</u>」 -----</p> <hr/> <hr/> <hr/> <hr/> <hr/> <hr/>
<p><b>제2조 (통·반의 조직)</b> ①(생략)            ② 1개통은 <u>6개반</u> 내지 <u>8개반</u>으로 구성한다.            ③ 반은 <u>20가구</u> 내지 <u>40가구</u>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p>	<p><b>제2조 (통·반의 조직)</b> ①(현행과 같음)            ② <u>6개반에서 10개반</u> -----            ③ <u>40세대에서 80세대</u> -----</p> <hr/> <hr/>
<p><b>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b>            ①~②(생략)  <u>&lt;신설&gt;</u></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u>민방위 기본법 제18조제6항</u>에 의거 당해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p> <p>④ 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되, 위촉된 해당 반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 해촉된다.</p>	<p><b>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b>            ①~②(현행과 같음)            ③ 통장선정, 추천방법 및 통장의 연임 시 재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 ----- 「<u>민방위 기본법</u>」 제19조제6항 -----</p> <p>⑤ -----</p> <p>상한연령을 초과하면 -----</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⑤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통장은 구청장이, 해당반장은 동장이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p> <p>1~6. (생략)</p>	<p>⑥---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 ---</p> <p>1~6. (현행과 같음)</p>
<p><b>제7조 (임무) ①(생략)</b></p> <p>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의 파악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p> <p>6~9. (생략)</p>	<p><b>제7조 (임무) ①(현행과 같음)</b></p> <p>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의 민원, 건의사항, 주민공동관심사항 보고 3.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협조 4.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 확인 5.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추진사업 협조 6. (현행과 같음) 7.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 발생시 초동조사 협조 8. 관내 각종 사건사고 보고 및 수방·제설 등 지원 9. 지역청소 업무 및 저소득층 수혜자 추천 협조 10. 적십자회비 모금지원 및 민방위훈련 소집통지서 등 송달 협조 11.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12~14. (현행 제7호부터 제9호와 같음)</p> <p>②----- ----- 통·반장의 가족 또는 통·반장이 지명한 반장이 -----</p>
<p>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8조 (반상회)</b> ①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u>가구주</u>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②~③(생략)</p> <p><u>&lt;신 설&gt;</u></p>	<p><b>제8조 (반상회)</b> ①----- --- <u>세대원으로</u> ----- ②~③(현행과 같음)</p> <p><b>제10조의 2(통·반장 교육)</b>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업무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과 사기고양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통·반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p>
<p><b>제11조 (실비수당등)</b> ①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b>제11조 (실비수당등)</b> ①----- --- <u>범위 안에서</u>----- ----- ②----- <u>범위 안에서</u>----- -----</p> <p><b>제12조(시행규칙)</b>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